

제437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7월28일(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5)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0)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1)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7)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3)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0)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0)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0)

상정된 안건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5) 4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0) 4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1) 4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7) 4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3) 4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0) 4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0) 4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0) 4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천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을 맡게 된 천준호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우리 소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운영개선소위원회이므로 간단히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이 좀 늦으시는 관계로 김한규 위원님 먼저 인사해 주시고 또 김미애 위원님 인사해 주시고 문금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순서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입니다.

운영개선소위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희도 일하는 국회 만들면서 일하는 운영개선소위로 천준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자주 열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정말입니까?

김미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입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늘 생각하는 게 지금보다 더 조금이라도 낫다면 그 길로 가자라고 생각해서 보건복지위 6년 동안 있으면서 늘 그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당에서 흠족해하지 않은 사안도 그게 맞다면 그렇게 가자라고 욕을 먹은 적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국민적 요구도 많습니다. 지금보다 낫지 않으면 그 길을 저는 내디디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소위가 국회운영개선입니다. 국회운영개선도 국민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좋겠고 일하는 국회가 진짜로 이로운 국회가 되도록 개선되면 좋겠고, 저 개인적 바람은 이 의자를 바꿔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무쪼록 천준호 소위원장님과 함께 잘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잠깐만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뭘 바꾸라고?

○**김한규 위원** 의자.

○**소위원장 천준호** 의자, 저만 그런 건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반갑습니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입니다.

천준호 소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사실 김태규 위원님께서 오늘 법사위 1소위가 있어서 거기에 가지길래 그러면 제가 자진해서 대참하겠다고 왔더니 인스턴트로 사보임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영구히 가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어떤 경우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다음,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인 박정현입니다.

저는 사실은 예산결산소위인데요. 오늘 박균택 위원님이 법사위 때문에 제가 오늘 하

루 사보임해서 왔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안건이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참여 같이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운명은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김준형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준형 위원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저는 외교 전문가로 들어온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김준형입니다.

원내대표도 원래 팔자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됐고요, 운영위도 팔자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당에 대한 배려, 여야 할 때 두 당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거 관련된 것 같은데요. 정보위에 교섭단체 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원천적 배제된 것에 저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다 헌법기관인데 뭘 못 믿어서 교섭단체가 아니면 정보위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이 부분도 향후에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다음, 이주희 위원님.

○이주희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입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소위원장님과 함께 정말 국회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법 잘 심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회이고 해서 아마 지금 언론인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 같은데요. 취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에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보좌진들하고 국회 직원분들이시지요? 확인 다 되신 거지요?

제가 사실은 소위 회의를 보통은 예전에는 여기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소위 회의를 전체회의실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있었던, 거쳐 왔던 상임위는 주로 전체회의실에서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전체회의 할 때는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법안심사하다가 막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김한규 위원 할 사람은 다 해요, 여기서. 싸울 사람은 다 싸우더라고.

○소위원장 천준호 그러면 오늘 해 보고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다음부터 장소를 옮기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잘 얘기해 보시지요.

오늘은 모두 8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식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은 배부드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5)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0)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1)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7)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3)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0)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0)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0)

(10시18분)

○소위원장 천준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경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심사자료 1쪽입니다.

신속처리대상안전 심사기한 단축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4건의 법률안, 진성준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 김남근 의원안과 송영길 의원안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송영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소위에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성준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 심사기한을 330일에서 75일로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안 같은 경우는 90일, 김남근 의원안은 최대 260일, 송영길 의원안은 70일입니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안 같은 경우에 신속처리안전제도 외에도 원구성 방식이라든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이 있고 송영길 의원안 같은 경우에도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처리대상안전의 심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건의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처리대상안전의 심사기한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전신속처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전신속처리제도는 국회법 개정으로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속처리대상안전으로 지정되어도 최대 330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안전이 적시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가결 법률안의 평균 심사기간과 비교할 경우에도 심사 단축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전신속처리제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서 여야 합의 처리한 점을 감안할 때 신속처리대상안전의 심사기간 단축 여부와 정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내용이 조금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180일 지나고 법사위 가서 법사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속처리제도 이것을 적용하는데 가령 상임위에서 처리 안 되고 법사위에 왔는데 법사위에서 의결이 된 경우, 즉 그때 의결은 합의 처리될 수도 있고 단독 의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올라왔을 때 본회의에서는 그러면 이게 신속처리제도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이 제도 적용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수석님, 이게 제목이 정확히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 단축 등인데 이 제도가 언제, 왜 도입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2012년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에, 기존에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 같은 경우는 상임위라든지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을 두고 논의 시간을 갖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무한정 지체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단계 단계별로 그다음 단계로 회의체의 의사를 구하는,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말씀은 빠진 것 같은데 소수당을 보호하는 취지가 큰 것 아닌가요? 그렇죠?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김미애 위원 그러면 그대로 뒤도 되죠?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김미애 위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검토의견서에 그런 게 다 빠져 있어요.

그전에는 동물국회, 그때 제가 정치하기 한참 전인데 뉴스에 보면 정말 불쌍사나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뛰어오르거나 막아서 잡아 흔들거나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그런 것 하지 말자,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해서 그때 다수당이 참여를 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의견에서 왜 이것이 도입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게 거의 없잖아요. 이 검토의견서에 향후에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도입될 때 그런 취지로 도입된 건데, 지금 현행은 330일 이상인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70일부터 260일 이상으로 가는 게 이게 저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다 돌리겠다는 뜻인지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다수당이 여당일 때는 국회가, 야당의 의견은 다 무시당합니다. 결국은 통법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

○김미애 위원 없어요? 괜찮아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지하기 위한 제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법익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무한정 방치되는 동물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은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의사 처리를 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이 법을 도입할 때는 그래서 다수당 뜻대로만 하면 안 된다, 국회가 폭력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때 다수당이 합의를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좀 저는 오히려 맹점이 있다고 봐요. 어떤 안건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있습니까, 그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대상 안건은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신속 처리해야 될 법안이 무엇인지는 빠지고 그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인데 있다는 게 저는 이게 법의 맹점이다. 그때는 그것은 아예 그냥 논의할 대상도 아니었던 것 같고 국회가 국민들 보기에 낯 뜨거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거기에 방점이 있어서 소수당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한 것인데 이제는 저는 오히려 소수당 보호의 취지가 다 몰각당하는 그런 개정안이 또 나오면 다시 그전으로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또 다른 분 토론해 주십시오.

○이주희 위원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당 보호 취지는 오히려 그 뒤에 예를 들면 무제한토론……

○김미애 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심사기한도 그렇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것도 없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이 정도로 330일 안에는 처리하자라고 둔 건데 그것을 더 단축시키는 것은 결국은 소수당은 그냥 할 게 없어요, 다수당이 될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천준호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처음에 국회 들어와 가지고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신속하게 안건이 처리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상임위랄지 이게 아예, 심의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교착 상태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국회선진화법 2012년에 개정이 되면서 나왔잖아요. 그때 상황을 보니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면서 단상을 접거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문금주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법의 개정 취지는 반영이 된 건데 중요한 것은 입법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 부분은 전혀 개선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

구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상임위가 아예, 위원장이 회의도 열지 않고 그러면서 안건이 아예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너무 지속이 되니 국민들께서 그래서 이것을 신속처리안건이 아니라 슬로트랙이라는 이상한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입법 교착 해소라는 또 하나의 측면, 그런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솔직히 조금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천준호**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지금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2대 국회 같으면 지금 속도로 나가면 약 9000건 정도 통과되지 않을까요, 법안이?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김민전 위원** 그렇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회 같은 경우에 한 국회에서 법안이 몇 건이나 통과되는지 아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많지 않지요. 미국 같으면 2년이 한 회기인데요, 한 500건 정도 통과되지요. 500건에서 조금 많게…… 이렇게 몇천 건씩, 거의 뭐…… 지금 우리 기준으로 2년으로 하면 4000건, 4500건 이렇게 통과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다른 나라가 이렇게 빨리 통과 안 된다는 걸 숫자로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해서 적시에 반영될 필요도 있지만 법이 너무 자주 바뀌면 우리 현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법을 심사하는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숙성시켜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우리처럼 이렇게 신속처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신속처리하지 않아도 235일밖에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빨리 되는 나라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 독재국가 아니고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속처리안건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가 폐지되면서 혹시라도 법안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교착될까 봐 그러한 우려로 이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제도가 도입될 때 의도보다도 지금 더 빨리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더 빨리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원래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교착 얘기하시는데 지금 교착된 상임위라는 게 존재하나요? 다 법안 다수결로 해서, 역대 이렇게 다수결로 지금 다 통과시키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다수결주의를 한대라고 해도 거기에는 다 숙성시키고 서로…… 특히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의안을 홀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다 그냥 다수결로 지금 통과되고 있는 이 판인데 교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지금 현재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법안들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교착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법의 안정성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대상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국회본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국회의 본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건 법률의 입법 절차하고 동일한 정도의 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서 개별 건별로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신속처리대상안건은 결국 물리적으로 소수당이 법안 처리를 막는 것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접촉을 형사처벌로 금지하고 또한 법안 처리 자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신속처리대상안건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330일 이상 처리하게 돼서 지난 국회의 평균 법안 처리 속도가 308일 정도인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법안보다도 더 늦게 처리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20대 국회에서 실제로 처음 도입되고 나서 처리된 법안들은 330일도 더 걸려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유치원 3법이 제일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한 자체로는 지금 75일, 90일, 260일, 70일 정도, 법안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진성준 의원 법안처럼 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본회의에서는 숙려 기간을 더 둘 필요는 없다. 이미 상임위하고 법사위에서 60일, 15일 정도 두면 본회의에서는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진성준 의원안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여쭙볼 거는 내용 중에 2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지정됐을 때 상임위에서 지금 180일 지나서 법사위로 넘어오면, 법사위에서도 다시 90일 동안 처리를 안 하면 본회의로 부의된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9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 버리면, 그게 합의 처리가 되든 아니든 단독 처리가 되든 의결을 해 버리면 패스트트랙이 지금은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회의 단계에서 패스트트랙 규정, 즉 지금 현재는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되고 안 되면 첫 본회의 개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그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지금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명확히 적용을 하자라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당연히 취지상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정한 이상 소관 상임위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패스트트랙 법안은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적용을 받는 게, 본회의에서 60일 내에 하는 게 현행법상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만약에 진성준 의원안처럼 처리를 하게 되면 굳이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오늘 22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 소위 첫 회의입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안건들이 여야 간에 굉장히 쟁점이 있는 안건들 또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처리를 위한 그런 내용을 심의하게 돼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오늘 심의자료 우리 어제 몇 시에 받았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한 7시 반 정도에 저희가 송부한……

○김승수 위원 제대로 이 심의 안전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 자리에 온 소위 위원들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자료 내용을 보시면 거의 일반적인 검토의 견……

지금 패스트트랙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해외 입법 사례는 어떤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영국하고 미국이 지금 제도……

○김승수 위원 법령에 규정이 돼 있나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저희가 그 부분은 실지 못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지금 정부 입법 같은 경우에는 장관 결재해서 국무회의 통과해서 대통령 결재까지, 국회에 제출되기까지도 한 1년 이상, 2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발의 입법 어떻습니까, 보편은? 이게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300일이 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법을 경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쟁점이 없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평균, 법안 중에 정말 자구 하나 그리고 그냥 동일한 자구로 인한 여러 개 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법안들 때문에 이 심의 평균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법안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처리가 안 됩니다, 워낙 많은 법안들이 또 제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정말 여야 간에 쟁점이 큰 법안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법안들조차도…… 이게 지금 300일도 보면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크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걸 속전속결로 하자는 것은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그냥 통과시킬 것 같으면.

존경하는 이주희 위원님 어제 다른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까마는 저도 공무원 시절에 국회 담당을 많이 했었는데 교섭단체 정도가 아니고 한두 명의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소위에서 1명이 반대하는 법안들은 거의 설득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지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와 실질적으로도 의회에서 서로 양보와 타협, 의회민주주의 이런 취지를 고려해서 내용들이 심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워낙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까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다시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 발의한 법안들도 몇 개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낮부끄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패스트트랙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저는 굉장히 본말이 전도된, 오히려 보면 우리 국회에 대한 위상을,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위상을 더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런 주장이고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이 법을 만들어서 국민생활이 조금 더 윤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좀 정상화,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패스트트랙에 그간에 어떤 법안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기 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

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관련된 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관련된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때 보니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은행법 그리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법, 패스트트랙에 담겨져 있는 법을 보면 큰 틀에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법 그리고 국민주권, 안전과 관련된 법 그리고 권력형 부패에 관한 법,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트랙과 관련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이견이 있으면 민생이나 어쨌든 국가 정상화나 권력에 대한 견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패스트트랙에 담기는 법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담기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보니까 21대 국회에도 우리가 법안 평균 심사기간이 303일인데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게 246일입니다. 이게 패스트트랙이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22대 국회에서도 평균 법안 심사기간이 235일인데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최장 기간이 246일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만들려고 했던 원래 취지가…… 지금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 그리고 권력형 부패, 국민 안전이나 주권과 관련된 법들이 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법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더라는 것은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밖에 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해서 올라간 법안들이 빨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지금 제대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진성준 의원안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형 위원**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준형 위원** 저는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오히려 패스트트랙이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하느냐의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너무 쉽게 통과한다. 도대체, 지금도 일방적으로 하는데 뭐 이게 필요하냐?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패스트트랙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 하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법의 타당성의 논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없애면 없었지 있다면, 패스트트랙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장래에도 정치적인 논쟁에 의해서 꼭 통과돼야 될 부분에 대한 여지를 주는 거라면 오히려 지금 통과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하면 정치적 이유가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다 통과시키는데 왜 패스트트랙 줄이나, 그거야말로 오히려 객관적인 필요성, 패스트트랙의 존재 이유가 되려면 이 장치는 미래를 위해서도 패스트트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게 오히려 지금은 객관적으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금주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해외 사례를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거의 신속처리안건을 둔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

는 정말 신속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안전에 대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행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조약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속처리안전제도를 두었는데 우리는 도입 당시에 일방적 직권상정과 그로 인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었기 때문에 해외하고 저희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고 오히려 해외 사례의 취지에 더 맞게 한다면 좀 더 빨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지금 말씀이 있으셔서 조금 얘기하면요. 의장의 직권상정제도를 폐지할 때만 해도 법안들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빨리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들을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한 삼백몇십 일 정도 만에 좀 통과시켜 보자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원구성이 그 이후에 아주 급변하면서 법안이 지나치게 빨리 통과되고 있어서 숙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진정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냐라는 얘기조차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이나 지금 진성준 의원안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신다라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또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상당히,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본회의가 상임위는 60일 이내에 이것 다 심사해라라고 이렇게 해 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상임위 중심주의로 가느냐. 그냥 본회의를 전체가 다 모여서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국회가 그동안 운영되어 온 원칙들을 오히려 더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안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일하는 국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소위 민주주의를 우리보다 오래 한 국회들이 법안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의회가 그만큼 숙고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만들고 있거든요.

○**김미애 위원** 우리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올라온 것들을 보면 간단치가 않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21대부터 국회에 있었는데 돌아보면 정말로 국민에게 국익에 시급하고 필요한 것들은 여야 협의 처리를, 합의 처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위에 있었는데 의대 증원 사태로 정말로 교착 국면에 있을 때도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시간 걸렸지만 다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27년 만입니까, 그렇게 보험료를 올렸거든요. 그 어려운 것도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시급하다는 것들 다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법명만 보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견해 대립이 많고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좀 더 숙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올라가고 저는 그랬던 게 상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회가 협치하자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니까? 입법기관이 법을 가급적이면 상호 존중하고 국민들 이견도 많은 것들이라면 더 좀 설명하고 또 지역 간에 참여하게 대립되는 것들은 지역 간에 더 소통하게 하고 국회가 갈등을 조율하는 그런 건데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런 과정들이 상당 부분 생략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느 특정 정당이 늘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맞게 운용되도록 하는 거지 비정상성을 또 비정상적으로 돌린다? 저는 그게 맞지 않다. 이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이고.

이 기간을, 심사기한을 단축한다? 이것으로 뭘 얻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국회가 운용되는 것이 우리 운영개선소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지 이 기간을 단축한다? 단축해서 뭐가 나아집니까? 지금보다 더 빨리 소수당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도움 되겠지만 그 외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추가로 더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주희 위원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특히 취지에 반대하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도 정말 잘 경청해 들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아까 김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우리가 2012년 그리고 2018년, 특히 이 법이 신설된 게 2012년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2012년에 도입될 때 그전에 소위 동물국회라는 물리력으로 옥신각신했던 그 사태를 방지하고자 여러 선진화 관련한 법안들을 도입하면서 그중에서도 계속 국회가 공회전하고 주요한 입법안들,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밖에서는 아우성이 벌어지는 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신속처리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입법취지는 그 당시 어떤 전체적인 전면 개정의 취지가 아니라 이 조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치 상황 때문에 그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최소한의 장치를 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이번에 지금까지 온 상황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 때문에 주요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아우성 대고 심지어는 일반법안의 처리 속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비교 대조군은 그렇게 설정이 돼야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법의 처리 속도와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의 처리 속도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이 지금 더 느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시의 입법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개정안 올라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김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의 취지 자체는 일단 저희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속처리안건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 기능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바로 이 조문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한 개정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은 아예 애초의 신속처리안건 이 조문 자체, 85조의2를 폐지하는 안이 올라오지 않는 한 여기서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입법 취지를 살릴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고, 지금 여기의 안건들은 대체로 다 기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기존에 180일로 돼 있던 것을 60일로 줄이거나, 진성준 의원님 안은 이렇게 60일로 줄이는 것인데, 180일을 60일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빠르게 태워 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안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에 공감이 되고 수치는 또 이따 논의하면서, 단축 기간은 논의하면서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또 추가로 토론하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 이 법이 복잡한 심사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이해하셔서, 과거에 국회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없애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지 못하는,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이 점유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길목을 막았을 때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장기간 방치되거나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들도 막아야 된다.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때는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저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이 법안이 최초에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 법제도가 더 안착화되고 정교하게 작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과 실제로 작동을 해 보니 이게 다른 법안의 처리보다도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는 면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제도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심사할 때 또 고려하셔야 될 게 모든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5분의 3 이상의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만 처리 절차에 태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나 이런 논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만 될 수 있으면 여야가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절차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처리해야 될 여러 법안들의 처리 속도를 좀 높이는 이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지금 개정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토론은 충분히 됐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또 다른 안건들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 쪽 논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좀 정리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5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자료 12쪽입니다.

무제한토론 제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혁 의원안인데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시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동의 제출 및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그다음에 종결동의 발의정족수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론할 의원이 없어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는 경우에 종결 후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일시에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첫 번째, 무제한토론 실시·종결 요건 변경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재는 우선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만 제출하면 무제한토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것을 재적의원 5분의 1로 완화해서 5분의 1 이상이 실시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갖다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표결하는 것으로 한 단계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뒤의 종결요건은 앞의 실시요건에서 이제 5분의 1로 완화했기 때문에 똑같이 5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5분의 3 이상 찬성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의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실시동의 의결정족수로서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분의 1 이상 찬성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는 반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결정에 있어서 헌법상 다수결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2월 국회에서 운영위 대안으로 무제한토론 중에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다’고 올라갔었는데 본회의 수정안에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지금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족수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무제한토론 종결 후 표결 시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의원이 없는 경우 토론이 종결되는데 종결 이후에 현행 법은 의장이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정족수가 많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의 모이는 시간을 감안해서 종결 후 12시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한 일시에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실시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한 명 이상이 무제한토론, 그러니까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무제한토론 요구 의사를 밝히면 바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무제한토론을 하겠다라고 한 명이 의사만 밝히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김민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5분의 1 이상 실시동의라고 한다면, 미국 상원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상당히 요건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게 미국 상원 것을 우리가 도입한 거지 않습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에 의사정족수를 확인해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실제로는 회의 자체도 안 열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의사만 표현을 하면 일상적인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본인이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면서 의사정족수를 확인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김민전 위원 사실 제도라고 하는 게, 대부분 민주주의 제도가 전 세계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들은 상당히 유사하게 발전해 가고 있고요. 그 유사한 트렌드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게 소위 의회민주주의와는 좀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나마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한다라고 해서 필리버스터를 좀 어렵게 해 놔고요. 그나마 도입하면서도 한 회기 내에 한다라고 해서 어렵게 실시요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회기도 아니고 회기를 자르기도 하고 하루 만에 종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약화된 형태의 모습이다, 정말 명분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또 더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회민주주의를, 이거 허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지금 현행이 3분의 1인데 그것을 5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완화한 다음에 한 단계 더, 3분의 1의 찬성이라는 표결 절차를 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김민전 위원 지금 어느 안인지, 어느 안은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의사정족수를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런데 앞엣것 하나만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다 얘기하신 거 아니고?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김민전 위원 저는 다 한꺼번에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더 하겠습니까.

○김미애 위원 다 한 거…… 방금 설명한 거 다 하셨나요?

○소위원장 천준호 설명은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고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저도 좀……

필리버스터가 뭐지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수단 아닙니까? 소수당으로서 할 수단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어렵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그냥 없애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리고 실시요건, 종결요건이 현행대로 하는 게 부합하지요. 최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게 고민해서 나온, 그 당시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치의 산물이 이 제도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냥 실시요건을 현행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필버 역사를 보면 1964년에 김대중 의원이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할 때 시간이 없는 점을 이용해 5시간 19분간 발언을 했

답니다. 그러나 10월 유신 선포 이후 73년에 국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제한 시간이 생기면서 필버가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해서 2011년에 부활해서 지금까지 시행돼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는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잖아요. 대한민국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오늘 이 개정안은, 실시·종결 요건을 구태여 이렇게 2단계로 어렵게 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고 또 무제한토론 중에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중지하겠다는 이것도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겁니다, 종결 후 표결 시기 규정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예 필버를 없애는 게 맞겠지요. 이렇게 계속 꼬아서 어렵게 만들고 하나하나 운영하다가 보니까 다수당 뜻대로 하는 게 여의치 않고 좀 귀찮아지고 이런데, 그래서 24시간 만에 끝내도록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어렵게 하겠다는 것은 그냥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야 의견이 달라서 다수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오히려 지지를 얻어서 다수당이 재고하거나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이 표결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수 있게 충분한 논의가 되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에 있는 법안들이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를 할 테니 처리해 보려면, 상정해 보려면 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의 볼모로 삼고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단순히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실제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법사위의 다른 참여하게 대립되고 있는 법안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퇴장을 했고 그 시간 동안 통과된 법안들, 원래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 법사위에서 30개 법안 중에서 한두 개 법안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나머지 28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버를 걸고 그래서 실제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여전히 지금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버스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남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유를 다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 대신에 예산조정이라는 절차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잘 진행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필리버스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했으면 듣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저희는 동의되지 않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제안한 정당에서도 당변을 말은 의원들 일부, 당변을 말은 의원들도 대부분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지 않고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방식의 필리버스터는 결국 24시간 동안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입법 지연 효과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정말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원들도 다 남아서 정말 어느 당의 주장이 더 맞는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구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최소한 중간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민 의힘에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24시간 전에 종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표결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불분명해서 이것은 한번 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정도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는데 그것은 어느 당 의원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 10분 내에 불러서 표결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는 의장님이 여야 원내지도부랑 협의를 해서 표결 일정은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지금 법안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김민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천준호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민전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김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버가 중간에 중단되었을 적에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에 의해서 표결 시간을 정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중단된 게 여당에게 무슨 곤란함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중단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드리겠고요.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준비하는 의원들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사실 24시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와서 들어 보고 판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투표가 대부분이 파티 유니티 보트(Party Unity Vot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별 의원들이 판단하는 경우는 아니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첫 번째는 하고요.

두 번째는 24시간 지연 효과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도 들어 보실 기회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상임위에서의 법안 심사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뭐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고요, 본회의에서의 투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필버를 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그래도 관심 있는 국민들께서는 아, 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여야 의원들도 다 나와서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정보를 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회가 여야 의원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드리고 그 판결이 저희한테 항상 유리하다고 저는 생

각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국민들께도 같이 생각할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 이것만은 그래도 꼭 좀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박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만 좀 먼저……

○소위원장 천준호 예, 말씀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필버가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필버가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필버의 내용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원래 필버의 핵심 의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공세,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공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펼치고, 이진숙 의원인가요? 제가 그날 필버 당번이라서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진숙 의원도 필버의 내용보다는 정치적 공세만 계속 외치시더라고요. 그러면 필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버를 오히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말씀하십시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전반기 때 필버 관련해 가지고 저도 국회법 개정안을 냈었는데 그때 같이 논의가 되다가, 그 당시에는 의장님 사회권 관련한 규정만 개정이 됐었는데 여기 오신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필버의 도입 취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도입 취지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 그러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남발이 되고 심지어는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안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다 묶어 가지고 필버를 걸어 버리고. 오죽했으면 제가 지난번 전반기 때 개정안 내놓을 때 상임위에서 합의된 안전에 대해서는 필버를 걸지 않도록,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까지 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더 이해를 못 하겠고,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전과 낭비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듣는 필버 제도를 현행처럼 운영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에서 이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건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이 사안도 제가 보기에 복잡한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워낙에 일상적으로 많이 겪었던 사안이라 쟁점도 잘 아실 것 같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또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도 여야가 입장의 차이만 있지 상대 입장에서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요 토론은 충분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인데요.

제가 전문위원회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은 무제한토론과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토론의 실시 및 종결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무제한토론 진행 중에 회의 중지와 관련된 내용, 중지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제한토론 종결 후 표결 시기 규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 부분에 대한 토론은 사실 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는 여야

위원님들 다 같으실 것 같아서 아마 이 부분은 더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현행법으로도 투표할 시간은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런 검토는 있으셨는지?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토론할 의원이 더 없어 종결하는 경우에는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다만 다음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사실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재적 과반수가 안 되면 표결 선포를 못 합니다. 어차피 지금 현행 규정상도 의원님들이 모여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새벽 3시에 더 이상 없어서 회의가 중지되면 원내대표 협의해서 모으라고 하고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협의해서 다음 날 9시에 하자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소위원장 천준호 그래서 투표가, 중간에 토론이 중단됐다고 해서 바로 표결에…… 여기 법안에 보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예전에 다른 법안에서 넣고 보니까 그것의 해석을 하루로 보는 경우도 있고 3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다른 법안에서 해석할 때 보면. 그게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는 지체 없이라고 하는 기간이어서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의원들의 표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시간을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운영상에서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안 그러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바로 표결하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얘기겠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본회의장에는 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 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표결 시간까지 회의가 중지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양새겠네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알겠습니다.

이것도 쟁점이 명확해지고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토론을 하고 다음……

○김한규 위원 죄송한데 중간에 한 가지만.

무제한토론할 때 한 가지, 법에 없는 건데 수정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게 관련 장관들이 24시간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무제한토론이 24시간 만이 아니라 만약에 24시간 지나서 막지 않으면 36시간, 48시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관 장관이 재석을 꼭 하도록 돼 있는데 장관은 발언권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꼭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회의장이나 사회를 담당하시는 분의 허락을 받아서 차관급으로 대참할 수 있게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준형 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너무 별세우기 같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한규 위원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장관은 24시간 내내 교체가 안 되도록 돼 있어서 화장실 갔다 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자리를 비우냐라고 구박을 하시는 경우

들을 가끔 봐서, 화장실도 아주 짧게 갔다 오시거든요.

○소위원장 천준호 그게 지금 법령 사항으로 돼 있나요?

○김한규 위원 법에 지금……

○소위원장 천준호 일반 법안 심사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관례에 따른 저기지요?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규정을 새로 법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회 규칙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행정실장 정진욱 현재로서는 사실 의장님이 원내대표들하고 협의해서 관례에 따라서 해 오신 사안인데, 무제한토론할 때 출석하시는 분들은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출석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님 권한으로 좀 유연성 있게……

○김준형 위원 그러면 안 바꿀 것 같고 오히려 막기 위해서는 법률로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진행하는 정당에서는 쉽게 그것을 동의해 주지 않을 수 있지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일단 법안에는 없는데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주제라서 말씀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한말씀만 좀……

○소위원장 천준호 예.

○김미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이 국민의힘에서 하는 최근의 필버가 국민적 관심이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가 24년도에 방송법·방문진법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3법, 이때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국민적 이견이 상당했고 또 하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그것도 필버로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저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보고, 또 대통령께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이름은 달리 부를 수 있겠지만 호황기에 과다한 이익이 발생할 때 노조가 이에 대해서까지 교섭을 해야 되나 또 쟁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이견이 있고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발언도 최근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시행됐는데, 이것도 미국에서까지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어느 당을 떠나서 얼마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견이 있으면 무제한토론이 돼야 되고 보장돼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당이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법이라는 게 꼭 어느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그런 언급을 꼭 하셔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라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전반적으로 무제한토론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들은 아니셨던 것 같고요. 그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좀 남용된다라고 하는 비판, 문제 제기 그리고 더 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의견 이런 걸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천준호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야 돼서……

○문금주 위원 아니, 한말씀만 더 드리면 좀 남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전반기에도 개정안을 냈는데, 그때 왜 그 논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된 법안이 올라올 경우는 필버를 못 하도록 좀 제한 장치를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적 관심이 있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고……

○소위원장 천준호 그런 내용이 지금 법안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전반기 됐다가 이제 사라졌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심의하면서 그런 안건을 추가해서 저희가 넣을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문을 할 수 있다면?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소위원장 천준호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김한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감안해서 속기록에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제가 국힘 의견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금주 위원님 말씀이 일견 저는 타당성이 있다, 왜 이렇게 동의해 놓고 필버를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 말씀도 저는 동의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당에서 의사일정을 짤 때 저희 필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사일정을 짜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원내 전략의 차원에서. 그러면 또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상임위에서 하나도 동의를 안 해야 되는구나, 문제 법안들이 이렇게 줄줄이 서 있을 때는. 만약에 상임위에서 어느 법안들을 동의해 주고 나면 그다음 필버의 위력이 굉장히 약화돼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다 동의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쪽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규제는 두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알겠습니다.

제6항부터 8항까지 수석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23쪽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회의장 내 마이크 등 음향장비 무단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형배 의원안이 그 내용이 되겠고, 한민수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철거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병 의원안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표에 보시면 3건의 개정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회의장에 마이크, 스피커 등의 음향장치 등의 반입이 금지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품 반입과 관련된 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문에 반입 금지 물품을 열거·예시하는 방식은 기술 발전 등 사정이 변경될 때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이 야기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전부 규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의 규정 방식을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

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회의장에서 취식하거나 신문·잡지 등 기타 간행물의 열독, 휴대전화기·개인휴대컴퓨터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개정해서 지금은 현행과 같이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국회가 제공하지 않는 영상·음향 장치 등 현행 법령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은 장치도 반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또는 사용중지 명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의장님의 회의 질서유지권을 통해서 상당 부분 실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1항의 경우에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뒤에 징계사유에서도 그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철거중지 명령과 징계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행법 규정에 의해서도 의장님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수정의견은 25쪽입니다.

그래서 음향장치나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현행법 규정에 의해서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허가를 받지 아니한 음향장치를 포함한다)’ 이렇게 수정한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토론해 주십시오.

○문금주 위원 수정의견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또 다른 분 토론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과거의 입법 과정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2005년에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다는 거잖아요, 포괄적 규정으로. 이거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또 이러한 제재는 이미 현재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회의장 질서유지권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개정 안 해도 가능하디 싶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또 정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이 정도는 굳이 개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미스러운 일들이 한 번씩 있기는 해도 그것은 의원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좀 개선하고 그래야 될 일이지 이것까지도 이 수정의견처럼 허가를 받고…… 대부분은 가지고 가지 않거든요.

저도 가끔씩 서류 담은 가방 들고 가는 것도 못 가져가게 해서 그러면 안의 내용물을 빼서 들고 가기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마 처음 한두 번 그런 제재가 있고 하면 그다음부터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도 국회의원들 양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현행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그때는 조금 예외적인,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있을 때인데요 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 합니다. 여당 쪽에서 보면 의제 외 발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쪽에서 보면 역대 필리버스터 중에서 그렇게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심각하게 규제를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우원식 의장이 아주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말고 필리버스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왜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하셨는지는 저도 조금 이해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정치적으로는 나경원 의원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어쨌든 그때의 상황은 굉장히 예외적이었고.

과거에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필리버스터 할 때는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의 입장이 돼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하고요. 너무 한쪽이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다른 쪽도 저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의사당에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때 마이크를 끄다 보니까 누군가 가서 들고 온 거였거든요.

○**소위원장 천준호**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본회의장만이 아니라 상임위장에서도 어느 당의 위원님이 위원장이든 제지를 받은, 소속 당이든 타 당이든 위원들이 소위원장이든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것을 본인이 녹화해서, 녹음해서 대외적으로 SNS나 유튜브에 공개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원장한테 뭔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비공개하는 소위원회에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을 녹음을 해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가 딱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 갖고 쓴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본인이 SNS에 올리기 위해서—보좌진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으니까—특정 의원의 발언을, 그러니까 본인의 보좌진이 본인을 찍게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다른 의원을 찍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냥 초상권 문제니까 못 하게 하는 걸로 막아야 될 거냐, 아니면 음성을 전체적으로 녹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의 규정이 조금 불분명해서 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을 두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 안전에 대해서는 꼭 오늘 처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좀 더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또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한규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위원님을 이렇게 찍는 건 싫으시지요?

○**김미애 위원** 저는 상상을 못 하겠는데……

○**김한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찍는 건 어떠세요, 회의 막 하고 있는데 제 발언하

면서 ‘제 인스타에 올릴 거야’ 이렇게 찍으면서 하는 것은?

○**김민전 위원** 그런데 회의 도중에 그런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되지요.

○**김미애 위원** 안 해야지요.

○**김한규 위원** 저는 안 하지만 보좌진이 위원님 뒤에 서 가지고 저를 찍으면, 비공개 소위인데?

○**김민전 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김한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요, 지금들. 여기서는 지금 안 하는데 그런 소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세요.

○**김미애 위원** 그것은 소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제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한규 위원** 제재 근거가 없어서 저도 좀 당황할 때가 있더라고요.

○**소위원장 천준호** 제재 근거나 기준이 없으니까 그것을 본회의에서 기준을 만들면, 주의 주자는 거지요.

○**김한규 위원** 소위는 좀 더 편하게 얘기하고, 물론 의사록에 다 남기는 하지만 영상이나 음성이 공개된다고 하면 저희가 논의할 때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근거, 금지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의원들이 그거를 금지 규정을 만들어야지, 지켜야 되는. 이렇게까지는 안 가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갈수록 심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SNS나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이?

○**소위원장 천준호** 왜냐하면 반대의 의견도 충분히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질서로 규칙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의 논의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사례에 기초한 접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일반론적인 접근을 해 주셔야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의견, 더 토론 없습니까?

그러시면 일단 우리가 주요 안건 세 가지 분야, 국회법 안에서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안건을 조금 정리를 한 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야당 간사님이 계셔야 논의를 할 텐데……

○**소위원장 천준호**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36분이니까 11시 45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김준형 위원** 아주 짧게.

○**소위원장 천준호** 예.

○**김준형 위원** 생각하시기 전에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필버도 그렇고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압도적,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에서, 그 맥락을 생각해서 피해의식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향후에 패스트트랙이 꼭 필요할 때,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율이 다음 총선에 간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비슷하게 됐을 때, 어느 쪽도 압도하지 않을 때 모든 게 공전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조금 대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권고

합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한마디만, 안 해도 될 말 같은데 제가……

○소위원장 천준호 예.

○김미애 위원 과거에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될 때 우리 당 전신이 여당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뭔지, 어떻게 도입됐는지 그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당이 다 수당일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예, 알겠습니다.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천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세 개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토론 과정을 쪽 들어 보시면 서 여당, 야당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 중에서 그 취지나 공감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토론 중에서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한 단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제도 자체가 남용되면서 사실상 신속처리안건 심사기한 단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심사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좀 주셨고 그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것은 정리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있었던……

○김민전 위원 정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궁금해서.

○소위원장 천준호 표결로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다수의견으로서 심사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그런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김미애 위원 어젯밤에 검토보고서 받아 놓고 아침에 소위 열어 가지고……

○소위원장 천준호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김한규 위원 좋습니다.

○김미애 위원 반대합니다.

○김민전 위원 반대합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복잡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천준호 5항부터 8항까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좀 있었고 좀 더 저희

가 심사숙고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안건들을 정리해 가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못 합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예.

○**김승수 위원** 저희 여야가 모처럼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는 타 상임위에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위원회로서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 그것을 통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다시 한번 혹시나 했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의문이 있고, 특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내에서도 그런 논의의 시간, 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당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도 줘야지 이게 법안 심사가 제대로 처리가 되는 거지, 어제저녁에야 오늘 논의 안건을 선정해서 또 거기에 대한 검토 자료를 주고 우리 소위 위원조차도 제대로 합의,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뭐 하러 지금 소위가 있고 전체회의가 있고 이 논의를 하느냐 하는, 우리가 또다시 국회 무용론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반기 운영위원회 첫 소위 아닙니까? 첫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렇게 첫 단추부터 무리하게 잘못 끼우면 그다음에 아무리 노력해 봐야 계속 이게 단추가 어긋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건까지도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해서 다음에 우리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무제한토론 신청과 국회 내에 음향장치를 본회의장에 반입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숙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다수의견으로 제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않고 좀 더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여야가 함께 의견을 좀 모으고, 예를 들면 협치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존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신속처리안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일반 법률 처리보다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법안 처리 속도가 더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현안들 중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들도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정비해서 법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이제는 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심사기한을 며칠로 둘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의 틀은 그대로 두면서 심사기한의 숫자를 변경하는 문제여서 예를

들면 깊이 있는 검토나 다른 의견보다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되는 사안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라도 오늘 의견을 좀 모아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고 제가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최소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시간이라도 줘야지요. 우리 위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 자체가 없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고 운영위 전체 위원들, 또 나아가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논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조차도 안 주고 바로 이렇게 의결하겠다는 자체는……

○**소위원장 천준호** 이 안이 제출된 것은……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천준호** 예.

○**김미애 위원** 이게 민생법안입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소위원장 천준호** 시급합니다.

○**김미애 위원** 이게 뭘 그리 시급합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민생법안 안 처리 안 된 게?

○**소위원장 천준호** 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요.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처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어제 운영위 전체회의 개최하고 어젯밤에 검토보고서 주고 아침에 와서 바로 처리하는 게 무슨 협치입니까?

○**소위원장 천준호** 이런 부분이 처음 이야기된 것은 아니어서 이미 잘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미애 위원** 아니, 저는 운영위 와서 처음 본 거지요.

○**소위원장 천준호**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토론도 충분히 되었고……

○**김미애 위원** 아니, 이것을 무슨 표결을 합니까?

○**김승수 위원** 우리가 지금 발목 잡고 있는 법안이 뭐가 있나요?

○**김미애 위원** 다수결로 할 것 같으면 다 다수결로 하세요. 이걸 표결로 왜 합니까? 다수결로 알아서 하지요.

그리고 답정너 소위 아닙니까? 오늘 이것 딱 처리하겠다고 오셔서 이것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한규 위원** 처리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천준호** 다 하겠습니까?

○**김한규 위원** 예.

○**소위원장 천준호**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승수 위원** 소위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운영위 소위를.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애 위원** 그러면 다 그렇게 다수결로 하세요. 뭐 하러 이것 합니까? 여당 마음대로,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일부 위원 퇴장)

○**소위원장 천준호** 전문위원님, 신속처리안건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우선 진성준 의원안의 경우에 위원회가 60일, 법사위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15일에 관해서 이게 법사위 심사기간이 일부 강화가, 연장할 수 있는…… 일정한 심사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서 30일이라든지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본회의, 그러니까 법사위가 의결했을 때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 이것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계속 유지하는 부분도 그 수정의견으로서는 저희가, 6쪽 맨 오른쪽에 보시면 6항으로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게 패스트트랙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에 부의된 날’ 이거는 법사위가 의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고한 거. 그래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면 90일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법사위 고유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180일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법 문언상 90일이 적용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 제정할 때부터 인용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인용 조문을 좀 달리 해서 법사위 고유법안은 다른 상임위하고 마찬가지로 180일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서는 90일이 적용되고. 물론 개정안과 같이 한다고 하면 고유법안은 60일, 체계·자구 법안은 30일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 조문을 단서만, 인용한다는 그 단서만 삭제하면, 3항을 인용하도록 하면 3항 본문은 법사위 고유법안이고 단서는 체계·자구 심사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며칠을 하자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날짜로 보면 지금 진성준 의원안처럼 위원회는 60일, 법사위는 30일 되고 본회의는 진성준 의원안처럼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 이런 식으로……

○**박정현 위원** 진성준 의원안은 위원회는 60일, 법사위는 15일인데 왜 30일로 하자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그러니까 법사위에 일정 부분 심사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는 사실 패스트트랙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하다가 이견이 있어서 지지부진하면 그때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180일이 진행되는 건데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지정돼서 법사위로 오면 바로 처음, 그 때부터 15일이 카운트되는 거라서 너무 짧은 면이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주희 위원** 3항·5항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진성준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위원회는 60일, 법사위는 30일로 해서 총 90일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준형 위원 세 달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한다’니까 그러면 90일 이상이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90일 이상, 본회의가 상정되는 날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정리가 되었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안건들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속기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미애 김민전 김승수 김준형 김한규 문금주 박정현 이주희 천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입법심의원 이동훈